

아동 실종사건의 효과적 처리 방안



아동 실종사건의 효과적 처리 방안

《 研 究 陣 》

연 구 위 원 : 이 윤 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9
제3절 연구의 방법	10
제2장 실종아동의 개념정의 및 법률적 검토	12
제1절 실종아동의 개념	12
1. 실종아동의 정의	12
2. 유사개념과의 구분	15
제2절 실종사건 관련 법적 체계	17
1. 아동복지법	17
2. 실종아동등의발견및유전자검사등에관한법률	18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19
제3장 주요 국가의 실종사건 처리제도	21
제1절 미국	21
1. 미국에서의 보호체계	22
2. 주 정부 차원의 앰버 경보체계	27
3. 실종아동원조법	27
제2절 캐나다	28
1. 미아보호체계	28
2. RCMP	31
제3절 벨기에	34
제4장 한국의 실종아동 처리실태	36
제1절 실종아동 발생현황	36
1.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현황	36
2. 실종아동 발생에 따른 문제	40

제2절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 분석	44
1. 경찰청	44
2. 실종아동전문기관	47
3. 사회복지시설	48
4. 장애인시설	49
5.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50
6. 시·군·구사회복지공무원	51
7. 언 론	51
제3절 실종아동 관련 프로그램	52
1. 얼굴 전환(Age Progression) 프로그램	52
2. 얼굴인식프로그램	52
3. DNA를 활용한 혈연 검색 시스템 (유전정보은행)	53
4. 실종유괴아동 엠버경보시스템	53
5. 예방사업	55
제5장 현행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제1절 아동 실종사건 처리의 문제점	57
1. 법·제도의 통일성 및 실효성 결여	57
2. 기초 생활 수급권자 지원방식과 정보공유의 제고	58
3. 과도한 업무에 따른 전문성 결여	59
4. 실종아동 관련 교육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59
제2절 아동 실종사건의 효과적 처리방안	60
1. 법·제도의 정비 및 보완	60
2. 기초 생활 수급권자 지원방식 개선과 실종아동 담당기관의 통합	60
3. 실종아동 관련 전문가 양성 및 특별 수사팀 확대·강화	61
4.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활용	62
제6장 결 론	64
참 고 문 헌	66
부 록	69

표 목 차

〈표 4-1〉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현황	36
〈표 4-2〉 아동실종 시 가장 필요했던 서비스의 비율	38
〈표 4-3〉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실종 장애아동의 비율	39
〈표 4-4〉 장애 유형에 따른 실종아동 분포	39
〈표 4-5〉 유형에 따른 아동찾기에 소요된 비용	41
〈표 4-6〉 아동실종 후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의 변화	43
〈표 4-7〉 서울시 소관 전광판	54
〈표 4-8〉 금융기관별 객장 내 PDP	55

그 림 목 차

〈그림 4-1〉 실종아동 발생당시 연령	37
〈그림 4-2〉 아동이 실종된 장소의 비율	37
〈그림 4-3〉 성별에 따른 실종아동의 비율	38
〈그림 4-4〉 실종아동 가족의 실직의 원인	41
〈그림 4-5〉 실종아동 부부의 싸움의 원인	42
〈그림 4-6〉 아동실종 경험에 따른 자녀등하교시 부모의 스트레스 정도	43
〈그림 4-7〉 경찰의 실종아동 찾기 처리과정	47
〈그림 4-8〉 실종아동 찾기 처리과정	47
〈그림 4-9〉 유괴경보 체계도	53
〈그림 4-10〉 실종경보 체계도	54
〈그림 4-11〉 발령 대상별 송출기관	5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올해초 경기도 안양의 이혜진, 우예슬양 유괴·살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부실 수사’로 경찰은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숨진 혜진양의 집에서 불과 13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용의자를 코앞에 두고서도 80일 넘게 경찰 2만 5000명과 수색견, 헬기까지 동원해 수사를 벌였던 경찰과 우리나라 실종사건 처리에 대한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이와같이 일반적으로 미아찾기라는 용어로 지칭되어오던 실종아동의 신고, 보호, 수색, 예방과 관련된 체계에 대하여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체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신고 및 보호체계와 관련된 행정력의 미흡, 미신고 시설 문제, 또한 최근 시행된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련된 국민들의 이해부족 및 한계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실종이란, 종적을 잃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아동 및 가족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헤어짐이 되므로 그 자체로도 엄청난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고 광범위 해진다. 아동이 실종됨으로 인해 가정은 자녀를 잃어버린 데 따른 충격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며, 이는 그 외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실종아동 찾는 것이 장기화됨에 따라 모든 가족생활이 아동을 찾는 것에 몰두하게 되므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힘들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나 기타 생활전반에 걸친 것들에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실종

1) 이석우, 대책없는 ‘아동·부녀자 실종 대책’ <http://starisborn.tistory.com/2204> (2008. 7. 15 검색)

아동의 발생이라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해 가정의 문제로 악순환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종아동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부모의 부주의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다루어야 한다. 특히, 실종되었을 시 그 원인이 납치에 해당하는 것 일 때에는 해결하기까지의 시기가 장기화 되어 더욱더 해결이 힘들며,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찰과 사회 사람들의 협조의 인식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실종아동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와 민간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5월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그 해 12월부터 시행하는 등 실종아동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아직도 애타게 실종아동을 기다리고 찾아 헤매는 가족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2차, 3차로 확대될 수 있는 가정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아직 자녀를 찾지 못한 가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법률상 '실종아동등'이라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단순미아)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실종의 개념을 단순히 잃어버려진 아동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가족으로부터의 이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단순실종과 유괴, 가출, 유기아 등을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발견한 이후에야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원인이 실종 아동찾기 체계의 문제인지, 경찰의 수사력에 관한 문제인지, 부모의 책임 유기에 관한 문제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아동 실종사건'이라는 개념을 비교적 상식적인 수준이나 저널리즘에서 사용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본격적으로 아동 실종사건을 주제로 하여 이루어진 학술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아동 실종사건에 대한 보다 객관적

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실종아동의 보호에 대한 일반인과 각 분야 종사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실종이나 실종이 의심되는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 신속한 가족 상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장애인 아동의 경우에 임의로 유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자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소홀히 한 채, 보호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 점은 행정력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고 의무나 책임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실종아동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보고된 바 없다. 문제 제기도 언론에 의한 보도나 실종아동의 부모들에 의한 호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대책 역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주도하는 회의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종아동에 관련된 신고, 보호, 수색, 예방 체계를 정리하고, 아동실종에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이라는 개념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성장과 발달을 제한받고,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개념으로서 그 하위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존재한다.

첫째, 만 14세 미만 아동이 자발적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가출)되는 경우

둘째, 만 14세 미만 아동이 길을 잃는 등(단순미아)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경우

셋째, 만 14세 미만 아동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경우

넷째, 만 14세 미만 아동이 약취·유기·유인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실종된 아동 중에는 위에서 제시한 유형 이외에 사건의 전말이 전혀 들어나지 않은 채 실종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중의 일부가 아동 유괴사건의 피해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출한 아동들 중에는 초기에는 자발적 사유(가출) 혹은 길을 잃는 등(단순미아)의 사유로 인해 약취·유기·유괴 등의 범죄 피해자가 아니었으나, 이후 이들 중 일부가 범죄의 피해자로 전환 될 가능성도 있으며, 아동이 처음 실종될 때부터 이미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약취·유기·유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종아동 중 범죄에 기인한 경우, 즉 약취·유기·유괴의 목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자발적 사유 혹은 사고로 인한 이탈이 추후에 약취·유기·유괴의 단계로 진행된 경우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실종아동에 대한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주요유형 별로 사건처리절차와 대처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관련체계를 정리하였다. 즉, 실종아동의 개념, 실종아동과 관련된 입법현황, 최근 실종아동 발생 현황 및 범죄에 의한 실종아동현황을 관련 공식통계를 통해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종아동과 관련된 신고, 보호, 수색, 예방 체계 등을 포함하는 처리실태를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다음, 외국의 실종아동 관련체계를 검토하여 봄으로써 우리나라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실종처리를 중심으로 실종아동 관련법과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역할, 특기할 만한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관련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종아동 사건의 효과적 처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실종아동 사건에 관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국내·외 연구 및 공식통계자료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실종아동 사건에 대한 경향분석과 연구방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정리 및 유사사례를 검토한다.

셋째, 실태파악과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통해 우리나라 실종아동 사건의 문제점과 외국
의 실종사건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넷째, 경찰을 중심으로 한 예방대책과 대응요령, 수사단계에서의 처리요령 등 구체적
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언한다.

제2장 실종아동의 개념정의 및 법률적 검토

제1절 실종아동의 개념

1. 실종아동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법률’에서 실종아동의 개념을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단순미아)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이라 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단순실종아동’과 ‘범죄실종아동’으로 구분하여 단순실종아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 중 가출하거나 단순히 길을 잃는 등(단순미아)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실종아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 중 최초부터 약취·유인·유기·사고 등의 범죄가 의심되는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 및 최초에는 단순실종아동이었으나 사후에 범죄실종아동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실종상황의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여 전문가가 정확한 상황판단과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아동이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발견 가능성이 낮아지고 아동과 가족의 상처가 깊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만일 타인 및 보호자의 약취·유인에 해당하는 유기나 사고의 경우라면 즉각적인 수사가 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간의 지체는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를 놓치게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실종된 아동의 사망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가출로 파악되어 귀가를 기다리거나 보호

자의 보호 소홀에 책임을 두게 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1991년 3월 26일에 실종되었다가 2002년 9월 26일 사체로 발견된 개구리 소년사건을 들 수 있다. 초등수사가 늦어진데에는 당시 부적절한 수사관행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의 지침에 따르면 미아는 8세 미만에 해당되어 이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사례였으며, 수색의 경우도 24시간은 귀가를 기다리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들이 만약 산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였다면 24시간은 사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이며, 사체 발견 후에 파악된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이라면 즉각적인 수색 개시에 의해서 범인을 검거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1년 당시 경찰은 대체로 가출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자폐나 정신지체, 발달 장애 등의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기로 오인되는 경우가 경험적으로 빈번하다. 2004년 상반기에 보고된 경우처럼, 장애아동의 부모가 의도적으로 자녀를 유기한 후 사회적 이목을 두려워하여 미아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그 반대로 장애아동이 미아로 발견되는 경우에 유기일 것으로 추측하여 적극적으로 부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종상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단순실종의 경우와 범죄에 의한 실종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단순한 실종아동의 경우는 집 근처나 공공장소 등에서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아동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인 가출과 비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집을 잃은 경우(단순미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출의 경우는 아동이 가정이나 보호되고 있는 시설에서 보호자의 허락 없이 행방을 감추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청소년이 대상이 되나 최근에 가출연령 층이 점차 연소화되는 경향이 있다. 가출이유로는 가정문제나 학업, 교우관계 등이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00마일을 넘는 경우는 전체 사례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유아가 가출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 신체적 혹은 정서적 학대 등과 같은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이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있게 되면, 범죄나 착취 등에 이용되게 된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범죄피해 요인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모나 아동의 부주의로 인하여 집을 잃게 되는 경우인 비자발적 단순실종의 경

우 단순한 미아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때 아동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 혹은 전화 번호를 말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갖추었다면, 즉각적으로 발견이 되지만 부모와 헤어져서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아동의 불안과 공포를 극소화하도록 안정을 시킨 후에 평소의 기억을 되찾도록 격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의 안전 교육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 것이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전혀 줄 수 없는 인지 수준에 있는 어린 아동이나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행정력이 결정적이다. 만일 적절하고도 체계적인 행정력을 갖추고 있다면, 적어도 단순하게 길을 잃은 아동은 100% 귀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범죄에 의한 아동의 실종사건의 경우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약취·유인·유기·사고로 구분하고 있다.

약취 및 유인에 의한 실종의 경우 형법 287조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 할 수 있으며 이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및 유인 죄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취라함은 폭력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말하며 유인이란 기망이나 유혹을 통하여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약취·유인의 주체에는 타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견해에 해당한다.

유기는 부모나 보호자가 어린 아동을 정당한 절차 없이 부적절한 곳에 버리거나, 아동을 강제적으로 집이나 보호처 밖으로 쫓거나, 한 번의 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유기아의 경우는 4세 미만이거나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4세 미만의 경우 미혼모이거나 저소득, 계부모 가정의 경우가 많고 후기 청소년기 유기인 경우 가출과 비교해서 더욱 심한 가족 갈등과 폭력을 경험하며 귀가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외 아동이 부모가 모르는 가운데,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각종 사고를 당한 경우에 아동이 보호자의 성명을 말할 수 없거나 목격자가 없거나, 가해자가 고의로 은폐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의죄'이외의 '유괴의 죄'에 대하여 형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유괴에 의한 실종사건은 형법 제287조와 형법 제294조에 명시되어 있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분류에서와 같이 실종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로 아동이 실종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이 실종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색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실종아동과 관련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모든 실종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다면 체계의 효율성은 절대로 증가될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실종아동을 개념적으로 먼저 간단히 정리하여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행방이 확인되기 전까지, 혹은 특정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약취·유인·유기·사고, 가출 및 단순 미아의 경우를 선불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약취·유인에 해당하는 유괴나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력이 결정적일 것이며, 유기나 가출의 경우에는 가족의 책임이 더 크다 하겠다. 단순 미아의 경우라면, 부모의 보호 소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나라에서 잃어버려진 아동을 찾을 수 없다면 행정력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동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종 상황에서는 어느 부분의 책임인지 확인될 수 없으며, 그래서 유괴와 사고 등에 대한 수색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과 단순 미아로 신고된 아동들의 보호와 이들에 대한 검색을 위주로 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사업인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는 개념적으로 볼 때 혼동과 비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종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수색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 되는 것이다.

2. 유사개념과의 구분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실종아동의 개념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따라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서는 9세 이상 아동은 가출로 보아 8세 이하의 아동으로,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 근거하여 18세 미만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미성년자를 20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등 아동의 연령 등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을 뿐만 아니라 처벌법규의 범위도 일정하

지 않았다. 그러나 법령이 제정된 후 실종아동은 협의적 개념인 ‘단순미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실종아동을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하여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모호하고 중첩적이었던 ‘아동’, ‘실종’, ‘미아’, ‘가출’과 같은 개념들에 대하여 개별법령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실종아동의 효과적 처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아동’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을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실종아동의 범위가 어느 정도 명확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의 나이를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혼동의 소지가 있다. 또한 아동의 개념과 일반적으로 혼동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의 개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를 만 10세미만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범위를 ‘아동보호법’상의 ‘아동’과 동일하게 18세 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범위를 19세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9세이상 24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 규정이 법제정의 취지에 따라 명칭 및 범위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의한 실종사건의 경우 아동의 범위를 ‘아동복지법’에서와 같이 18세 미만인자로 규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로서의 여성아동 등에 대한 보호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실종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경우를 지칭하고 있으나 ‘민법’에 따르면 ‘실종’의 범위를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종아동사건의 실종신고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운점과 더불어 민법성 권리관계에 있어서의 실종과 범죄로 인한 아동의 예방 및 보호로서의 실종의 범위가 다르다는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종이라는 사전적의미가 ‘소재나 행방, 생사여부를 알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9)는 점에 비추어 과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미아’라는 용어는, 대개의 경우 단순히 잃어버려진 아동을 의미한다. 연세한국어사전(1999)에 따르면, 미아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잃은 아이’라고 하고 있어 실종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모호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약취·유인을 동반하는 유괴와 사고 및 단순미아와 유기, 사고 등이 아동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분류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하에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실종 상황의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에서는 미아라는 용어대신 실종아동이라는 개념으로 대치되어 현재에는 실무상 실종아동으로 그 용어가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을 포함한 일부 법령에서 미아라는 개념이 남아있는 점은 향후 법령정비 과정에서 통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2절 실종사건 관련 법적 체계

1. 아동복지법

최근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줄지 아니하여 아동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의 근거가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법 제9조제3항)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장으로 하여금 아동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법 제9조의2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법 제23조)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연구·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의 실시,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넷째, 아동보호전문기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도록 한다.

2. 실종아동등의발견및유전자검사등에관한법률

‘실종아동²⁾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560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되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신고체계의 구축·운영과 수색 및 수사를 하도록 함에 따라 실종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실종아동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수색·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유전자검사 결과의 열람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실종아동등의 구분(제2조)에 대한 규정으로 실종아동등을 범죄와 관련된 실종과 단순실종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대응을 할 필요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가출 또는 단순히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단순실종 아동등과, 약취·유인·유기 등의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2)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범죄실종 아동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실종아동등이 범죄행위와 관련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단순실종 아동등과 범죄실종 아동등으로 구분하여 추적 또는 수색·수사를 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제3조)에 관한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전국적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처리 등을 위한 사무시설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등 경찰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정보통신망을 운영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 및 복귀가 기대된다.

셋째, 수색 및 수사(제4조)에 관한 규정으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한 수색·수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출동시켜 실종아동등의 발생현장 및 주변을 탐문·수색하고, 범죄실종 아동등으로 인정되면 수사개시를, 단순실종 아동등으로 인정되면 발견을 위한 추적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종아동등 수색·수사의 기준·유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 및 복귀가 기대된다.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 등에서 환자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신상카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확인하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때에는 실종아동의 가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정보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실종아동 등이 조속히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보존기

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44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위한 서면동의서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확인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44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실종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실종신고 양식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양식을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제3장 주요 국가의 실종사건 처리제도

주요국가의 실종사건 처리제도를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이 실종아동과 관련된 일은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³⁾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의 실종아동찾기 체계를 검토하였다. 이 국가들은 단순 실종아동뿐 만 아니라 유괴와 아동 착취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인터넷 사이트를 마련하여 긴밀한 정보 교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전자 분석(DNA)이나 얼굴 전환 기술(age-progression technology) 등,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제1절 미국

미국에서는 실종아동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매우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즉, 실종아동은 가출, 유괴, 단순한 사고, 보호자의 부주의, 잘못된 의사소통 등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NISMART 2002). 따라서 실종아동은 단순히 길을 잃어버린 아동으로부터 여러 원인에 의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모든 아동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러한 포괄적인 실종아동에 대한 개념은 실종아동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1999년에 실시된 실종·유괴·가출·유기 아동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The National Incidence Studies of Missing, Abducted, Runaway, and Throwaway Children; 이하 NISMART)는 실종 신고된 미아와 실종되었으나 신고되지 않은 미아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미아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도 미아는 “단순

3) 박은미, “효과적인 미아찾기 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개소15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2002.

실종부터 유괴, 가출, 유기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원인에 의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다.

1. 미국에서의 보호체계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다양한 미아찾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관련된 민간 기관들도 있으나 대표적인 민간단체인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미국은 민간기관 중심의 미아찾기 단일망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아찾기에 대한 단일망 체계는 1984년에 전국 미아 및 피착취아동 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이하 NCMEC)가 설립되면서 구축되기 시작했다. NCMEC는 아동 유괴, 괴롭힘, 성적 착취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아를 찾는 데 필요한 도움을 부모, 경찰과 사법기관, 학교, 지역사회에 주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모든 주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실종 신고가 취합될 수 있도록 24시간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아가 발생하면 미국 전역의 경찰 순찰차 및 담당 형사에게 실시간으로 자료가 보내져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후 전문가들은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경찰과 각 주의 정보센터에 분석 자료를 보내어 공유하며, 경찰이 증거 수집, 수색 영장발부, 피해 아동 인터뷰, 미아찾기 수사활동을 할 때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NCMEC에서는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아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지 서비스도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1981년 Adam Walsh 라는 6세 아동이 유괴되었는데, 이 아동의 부모들이 아동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었다. 이에 1984년 Adam Walsh의 아버지인 John Walsh는 비영리 기관인 NCMEC를 설립하게 되었고, 1999년 9월 8일 CA(Computer Associates)의 Charles B. Wang 회장으로부터 5만불의 기금과 기술을 받아 1980년 60%에 불과하던 가족으로의 귀가율을 현재 93%에 이르도록 하는 체계로 구축되었다.⁴⁾

NCMEC의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되는데, 기술의

4) 김상균, “실종사건처리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범죄심리학회 정기학술세미나 2006.

발달과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평가, 그리고 적극적인 민간단체와 공공단체 등과의 협조가 그 핵심적인 요인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물리적으로 안정되고 영구적인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점이고 이를 발판으로 예방과 교육, 그리고 사례관리와 분석 등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이 센터에서는 아동이 사라진지 몇 년 후에도 아동의 얼굴의 변화를 추측할 수 있는 얼굴 전환 프로그램들이나 다양한 체계들과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연결망(Network)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NCMEC의 web site에는 매일 2만명이 접속하고 있다. 또한 앞서 다양한 협조체계(partnership)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아와 아동 피해 예방에 대한 국가적 정보처로서 기능하고 있고, 법무부 소속 청소년 비행 예방 및 보호국과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현재 12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와 민간 단체의 최상의 협조적 작업의 예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년 3,200건에서 4,600건의 단기 유괴(가족에 의하지 않은)가 법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0건에서 300건은 전형적인 유괴로 보여진다. 모든 연령 대의 아동이 피해자가 되고 있으나 특히 11세에서 14세의 여자 어린이와 6세에서 9세 사이의 남자 어린이가 높은 빈도를 보인다. 2/3의 유괴 사례는 성폭행과 관계되며 대다수의 피해아동이 길거리에서 유괴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매년 114,600건의 유괴가 시도되고 있으며 아동의 가족과 관계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진다. 가족에 의한 유괴도 미국에서는 매년 354,100건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반수 정도는 양육권을 받지 못한 아버지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은 대부분 2세에서 11세로 나타나고 있다. 가출의 경우에는 매년 446,700건으로 추산되고 있는바, 이들 중 133,500명의 아동은 가출 기간 동안에 안정된 보호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1/3의 아동이 같은 해 동안에 1번 이상 가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은 청소년기의 아동들이다. 또한 매년 127,100명의 아동들이 보호자로부터 쫓겨나거나 가출 후 찾지 않거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 당하고 있으며, 59,200명의 아동이 안정된 보호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 아동은 청소년기의 아동들이지만, 유괴의 경우에는 4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매년 438,200명의 아동이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행방을 모르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가 바로 아동의 행방을 알게 될 때까지 이것이 단순한 미아 사건인지, 유괴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행방을 알게 될 때까지는 미아

(missing children)로 분류되는데, 이들 중 139,100 사례가 경찰이 개입되기에 충분히 위협하고 심각한 사례였다. 이들 438,200 건의 사례 중에서 반 정도가 4세 미만에 해당되며, 24시간 이내에 해결되었고 1/5 정도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으며, 14%가 부모로부터 이탈된 동안에 학대나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⁵⁾

미국의 NCMEC 사례에서, 피해자에 의해서 설립된 민간 기관이 민간 기업의 기술과 재원의 투자, 그리고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효과적인 미아찾기 체계를 구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단순 미아 뿐 만 아니라 유괴나 유괴에 의한 착취, 가출 아동들에 대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CMEC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⁶⁾

가.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1) 연혁

- 1984년 설립한 비영리 민간기구
(1981년 유괴·살해된 Adam Walsh의 부모인 John Walsh가 설립)
- 1984년 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에 의거, 실종아동 관련한 국립정보 센터로서의 전권 위임
- 법무부, FBI, 재무부, 국무부, OJJDP 등 다수의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실종아동 찾기 및 예방사업 실시
- 본부는 Virginia 주(州) Alexandria에 위치함.

2) 업무

- 실종 또는 성학대 아동에 대한 정보센터 역할
- 국제적 아동유괴 사례 담당
- 전 세계 실종아동의 사진과 신상정보 홍보

5) 박은미, 앞의 글, 10면.

6) 최용진, "효과적인 실종아동 찾기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방안 모색", 제4회 아동정책포럼, 28면, 2006.

- 실종아동 사례에 대한 수사, 법률적 기소, 치료에 대해 지원
- 실종예방프로그램 실시
- 범집행기구 및 민간단체(사회사업 전문가 등)에 교육프로그램제공
- 실종아동 관련 입법정보 제공
-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3) 프로그램

가) 실종아동 찾기 프로그램

- 24시간 Hot-line 운영
- 사례분석·지원 : 사례유형 분석 및 조사, 실종아동 가족지원
- Amber Alert(America's Missing Broadcast Emergency Response Alert) : 실종아동 발생시 이를 즉각적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 텔레비전, 라디오 채널 방송,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 전광판, 시내 전광판, 휴대 폰매체 활용.
- Picture Them Home
: 실종아동 사진홍보 캠페인. 미 전역에 direct mail(광고우편물)을 통한 실종아동 사진 우편엽서 발송 등 375개 파트너와의 대단위 네트워크를 통해 실종아동 사진 홍보
- Age-progression Program
: 실종된 지 오래된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후의 모습을 추정하는 얼굴변환 프로그램. 실종 당시의 연령이 2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photoshop 활용한 프로그램 실시
- Project Alert
: 미(美) 연방, 주, 지역 집행기관(경찰)에서 은퇴한 퇴역경찰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역 경찰관에게 수사방향 등 조언과 지지해 줌

나) 가족지원 프로그램

- 부모와 부모 지원 프로그램 (Parent to parent) : 실종아동 부모들을 연결하여 두 가족이 동의할 경우 협력관계를 맺게 함. 주로 발생장소와 시간이 유사한 경우 부모들이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함.
- 북귀시 경제적 지원서비스 : 실종아동을 찾은 가족들이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민간부문 파트너인 기업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여행 및 숙박비용 지원
- 팀 호프(Team H·O·P·E: Help offering Parents Empowerment)
: 실종아동 가족 및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부모, 가족들로 구성된 자조모임 성격의 프로그램

다) 예방 프로그램

- 예방교육 및 관계자 교육 : 수사요원, 청소년범죄 담당자, 의료전문가 등을 상대로 실종아동 수사 및 예방, 아동 성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코드아담(Code Adam) : 미국 최대의 아동보호 프로그램으로 월마트에서 처음 시행함. 실종아동 발생시 고객이 직원에게 말하면 즉각 코드 아담 경보가 발령되고 모든 직원들은 일을 멈추고 아동이 쇼핑물을 떠나지 않도록 수색하며 10분이 지나도 찾지 못할 경우 즉각 경찰에 연락하는 시스템
- 넷스마츠 웹사이트 : 아동, 부모, 교육자, 집행기관에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사이트 운영

2. 주 정부 차원의 앰버 경보체계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26개 주에서는 앰버 경보체계(Amber Alert System)를 미아찾기에 활용하고 있다. 앰버 경보체계는 1996년 Texas주에서 Amber Hagerman이라는 9세 소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주 정부 차원의 긴급 미아찾기 경보체계이다. 그 소녀의 이름인 Amber를 “America’s Missing Broadcast Emergency Response”로 약자로 명명하여, 미아발생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신속히 미아를 찾아내기 위한 미아찾기체계를 가리키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80만명의 아동들이 실종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유괴사건은 소수에 불과하다. 앰버 경보(Amber Alert) 프로그램은 유괴된 것으로 믿었던 실종아동들을 찾기 위해 1996년에 창안되었다.

앰버 경보체계는 미아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그 지역의 TV와 라디오를 통해 미아발생 내용이 24시간 속보로 방송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8살 이하의 어린이가 유괴되면 지역 라디오방송국은 특별 경보방송을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02년 7월 1일에 앰버 경보 체계를 도입하였는데 도입 첫 달에 13건의 앰버 경보가 발령되었고 그중 12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렇듯 앰버 경보체계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현재 연방 정부에서는 앰버 경보체계를 미국 전역에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3. 실종아동원조법

미국은 1984년에 실종아동원조법(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연방정부가 미아찾기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 애초에 하나의 독립된 형태의 법으로 제안된 것이 아니었다. 1983년에 미국 상원 의회 소속 사법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는 기존의 청소년보호 및 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Law)에 미아를 찾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항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의회에 개정안 통과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아문제를 주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미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지도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

식이 공유되면서 1984년에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되었다. 실종아동원조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미아 발견시 해당 위치를 알리는데 필요한 전국 무료전화틀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둘째, 미아를 찾는 주 정부, 지방정부, 사법기관, 개인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단위의 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CMEC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에서는 미아예방 프로그램의 일종인 아동 유괴방지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것은 미아문제에 대한 사후대처 못지않게 사전예방이 중요함을 제도적 차원에서도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실종아동원조법은 오늘날 체계적인 미아보호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2절 캐나다

캐나다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아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가출, 유괴, 유기, 사고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아동을 모두 미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경찰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누구나 아동기에는 미아가 될 수 있고, 아동은 범죄의 표적이 쉽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1. 미아보호체계

캐나다의 미아보호체계는 캐나다 경찰 산하의 전국 실종아동 서비스(National Missing Children Service; 이하 NMCS)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미아 및 아동관련 민간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갖고 결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1986년에 설립된 캐나다 경찰청(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⁸⁾)은 그 산하에 미아 문제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소(Missing Children Registry; MCR)를 두고 있었고, MCR은 2001

7) <http://www.ncjrs.org/whatsncjrs.html>.(2008. 6. 10 검색)

8) www.ourmissingchildren.ca(2008. 6. 10 검색)

년 NMCS로 전환되었다. NMCS는 캐나다 국내경찰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 경찰기구(Interpol)와의 연계를 통하여, 미아발생시 신속한 연락망 체계로 유괴자나 미아의 소재 파악에 전략적으로 대처한다. NMCS에서는 나이변화에 따른 사진 예측 서비스(photo-age progression service), 가족이 직접 미아를 찾아다닐 경우 여비 지원, 각종 조사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의 협력, 미아를 되찾은 이후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MCS의 조사국에서는 미아에 관한 연구를 시행중이며 보고서와 소식지를 발간하고 미아의 추세와 범위를 규명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전역의 대중매체에 캐나다 미아의 정보를 알리고 있고, NMCS는 인증받은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 실제적인 미아찾기 활동, 아동안전 교육을 통한 범죄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아울러 미아를 둔 부모에 대한 지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993년부터는 NMCS를 비롯한 4개 정부부처와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종아동 프로그램(our missing children program)”을 수행하고 있다. 4개 정부부처가 하는 미아찾기와 관련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C CRA)에서는 미아가 캐나다 국외로 이동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아를 찾기 위해 캐나다 국경부근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미아 관련교육을 실시하며, 미아발생시 국외로 이동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둘째,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CIC)에서도 C CRA와 마찬가지로 미아가 국외로 이동되는 것을 막고 빠른 시일 내에 미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특히 CIC직원들은 캐나다 국적을 갖지 않은 미아에 대해서도 캐나다 아동과 동일한 비중으로 미아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셋째,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DFAIT)에서는 유괴되었거나 유괴 위험에 처해있거나 캐나다 밖으로 이동된 아동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돕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넷째, Department of Justice Canada(DJC)에서는 미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에서 발견된 미아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NMCS의 본국송환 요청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송환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즉, “실종아동 프로그램(our missing children program)”에서는 4개의 정부부처가 긴밀한 상호협조 속에서 미아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각 주에 민간단체(Child Find Organization)가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실종된 아동을 찾거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지문 클리닉을 통해 아동의

신원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거나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미아 실종 전화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운영하며 미아나 유괴, 가출 사건을 신고하도록 전용선을 두고 있다. 이들 역시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Ontario주의 경우 몇 가지 특기할 만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1999년 13,000명의 아동이 지문을 프린트했다. 이 프린트를 통하여 미아로 신고되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문 이외에도 건강 상, 학교 생활 상 중요한 정보나 사진 등도 함께 자료로 보관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생아를 위한 ID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바, 이 주에서 태어나고 있는 40,000명 이상의 신생아에게 무료로 발바닥 프린트와 사진을 제공하는데, 신생아에 대한 신상 자료를 보호자가 갖고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예방 교육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미아찾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실종아동 등록처(Missing Children Registry)를 경찰체계(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에 두고 모든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아동의 실종에 있어서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바, 부모와 함께 아동을 찾는 과정에 참여할 책임이 있으며, 실종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꺼이 협조하고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부서(MCR)의 통계에 기초하여 캐나다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낯선 자에 의한 유괴는 높은 빈도를 보이지는 않지만 각 사건은 전국적으로 매우 경악하게 하곤 한다. 전형적인 경우는 장기간 유괴되다가 살해되거나 성폭력을 당한 채 발견되는 경우 등이다. 반 이상의 유괴는 살해되는 경우이며 아동의 집 근처에서 발생하곤 한다. 가족에 의한 유괴에 있어서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된 바 없으나 대체로 별거나 이혼 기간 동안에 발생하며, 부모나 아동 모두에게 심각한 정서적 영향을 남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가출이 실종아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가출의 원인은 다양한데 주로 심각한 가족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이러한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출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2. RCMP

캐나다의 연방경찰인 RCMP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캐나다의 실종아동 찾기체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

(1) 연혁

- 1986. 8월 RCMP(연방경찰) 내에 실종아동관련 정보를 종합하는 Missing Children's Registry(MCR) 설립
- 2001년 Missing Children's Registry(MCR)를 National Missing Children Services(NMCS)로 명칭 변경함
- 4개 정부기구(RCMP, 외교부, 법무부, 국경수비대)가 연계하는 캐나다 실종아동 찾기 기구(Our Missing Children Program).
- 캐나다 국적 실종아동 정보를 경찰, 비영리기관, 부모에게 제공.
- 모든 캐나다 경찰, 캐나다 경찰 정보센터(CPIC)와 연계된 관련기관, 미국 경찰 및 인터폴을 통한 40여 개국 경찰청과 연계
- Ontario 주(州) Ottawa에 위치함

(2) 업무

- 실종아동 정보 수집 분석, 통계
- 경찰기관에 신속히 실종아동 정보 제공
- CPIC 실종인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 실종아동 찾기 과정 중 수집된 각종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
- 전단지 제작 및 배포
- 실종아동 찾는 그룹과 경찰 사이의 정보교환 도움
- 경찰관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9) www.ourmissingchildren.ca/en/publications/police.html(2008. 6. 12 검색)

- 인터폴 공조 등

(3) 프로그램

- Our Missing Children(정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 다음 4개 기관으로 구성됨.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잘 협조하고 있음
 - NMCS, RCMP: OMC 프로그램의 리더 역할.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율.
 - 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CBSA): Border Alert 진행.
 - Foreign Affairs Canada(FAC): 헤이그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적 유괴사태 개입.
 - Department of Justice Canada(DOJ): 관련 법률, 정책수립
- 사례분석·지원 : 사례유형 분석 및 조사, 실종아동 가족지원
- Age-Progression program : 아동의 현재모습을 유추하는 프로그램.
- Border Alert : 국제공항 및 국경의 출입국관리소에서 실종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국제적 유괴사태인 경우 실종아동 여부를 조사함. 캐나다 입국시에만 확인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음
- Amber Alert program : 실종아동 발생시 경찰과 미디어기관이 연계하여 즉각적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
- 최근 5년간 20건의 AMBER Alert 발령하였고, 80% 이상이 성공하였음(발령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AMBER Alert는 매우 드물게 경고함. 또한 AMBER Alert를 너무 자주 발령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경각심이 무뎠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령하고 있음)
- 다음의 조건일 때 가능
 - a) 유괴인 경우
 - b) 아동이 심각한 증상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 될 경우
 - c) 용의자(범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
- Training program : 경찰 대상 조사훈련 프로그램. 가족법, 범죄관련법, 실종아동 관련 자료 등을 2일 일정으로 교육시킴

- Research Studies : 사례분석 및 연구, 브로셔·팜플렛 등 발간
- 비영리기관과의 연계 : 캐나다에는 전단지 발송하는 기관, 사례조사하는 기관, 가족 복귀시 도움을 주는 기관 등 각각 역할을 달리 하는 실종아동 관련 비영리기관이 다수 있음. RCMP에서 인정하는 비영리기관은 7개 기관이며,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고 있음
- International Partnerships : 미국 정부 및 NCMEC 연계, 인터폴 통한 40여개국 경찰청과 연계.

(4) 주요 비영리 민간기관

① Child Find Canada

a. 연 혁

- 1984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관으로 캐나다에 있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실종아동 관련 단체임.
- 1983. 1월에 실종된 6세 된 Tania Murrell의 사건을 계기로 설치 됨.
- RCMP 및 NCMEC와 연계하고 있으며 주된 사업으로 실종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b. 업 무

- 실종아동 찾기 및 복귀과정 진행
- 실종아동가족 지원
- 실종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등 프로그램
- 실종아동 관련 캠페인 진행

c. 프로그램

- 실종아동찾기 프로그램 : 실종아동 부모 상담, 사례 조사, 미디어, 포스터 등 활용하여 찾기과정 진행
- 실종예방 프로그램 : 부모, 학교, 경찰, 관련기관, 지역사회조직 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 교육 실시. Kid Check ID Program을 통해 아동의 평소 인적사항 및 지문을

낯인해두어, 이 자료를 아동의 실종발생시 경찰관에게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② The Missing Children's Society of Canada, MCSC

a. 개요

- 1986.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b. 업무

- 실종아동 신고접수 및 찾기(조사, 정보수집, 사진홍보 등)
- 실종아동가족 상담 및 지원
- 미아검색과 회복을 돕기 위해 관련된 영역에서 전세계적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관련기관 및 일반인 대상 교육 실시

c. 프로그램

- 실종아동 찾기 프로그램
 - : 부모상담, 사례조사 및 분석, 미디어, 포스터 활용 등을 통해 실종아동 찾기과정 진행
- 교육 프로그램 : 경찰관 및 법률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유형 판정, 부모상담, 실종아동 및 가족의 심리적 영향, 실종관련 자료, 증언수집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 실시

제3절 벨기에

벨기에의 경우에는 전 유럽에 연결망을 형성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실종 및 성적 착취 아동을 위한 유럽 센터(The European Centre for Missing and Sexually Exploited Children)라고 명명되어있으며, 벨기에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실종 신고된 아동을 찾고, 아동의 실종과 성적 착취를 예방

하는 것이다. ‘아동 중심(child focus)’이라는 약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 센터의 경우에 사례관리를 다학제간 팀을 구성하여 하고 있다. 이 팀에는 범죄전문가, 법률가, 사회사업가 등이 포함되며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팀은 부모와 아동을 지지하고 아동의 복지를 추구하도록 노력한다. 이들이 아동과 부모를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며, 첫 대면을 하고 사례가 종료될 때까지 깊이 있는 도움을 주게 된다. 이 센터는 또한 11명으로 구성된 응급전화(hotline)를 운영하고 있는데, 24시간 체제이고 무료 발신 전화이다. 2명은 낮에 1명은 밤에 근무하여 교대로 작업하고 있다. 이들 전화 접수 요원들은 소정의 훈련을 받아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화 접수 요원들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집 목록을 가지고 있다. 대개 아동이나 25세 미만의 젊은이가 가족 이외의 사람에 의해서 유괴되는 경우를 실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가족에 의한 유괴는 부모 관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센터는 특히 아동의 성적 착취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아동을 악용한 매매춘과 성폭력, 성학대에 대한 개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출을 25세 미만의 자가 보호처에서 벗어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출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가출 요인과 관련되거나 30일 이상 실종되었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경우를 특별한 상황으로 보고있다.¹⁰⁾

10) 박은미, 앞의글, 13면.

제4장 한국의 실종아동 처리실태

제1절 실종아동 발생현황

1.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아동이 발생했을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수배를 하게된다. 이러한 전산망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수배 및 해당 경찰관서에 실종아동에 대한 발생을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종이 장기화 될 경우 경찰에서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처리현황은 <표 4-1>과 같다

<표 4-1>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현황¹¹⁾

연 도	발 생 건 수	발 생 현 황	
		보호자인계	미 발견
2000년(8세이하)	3,821	3,814	7
2001년(8세이하)	3,076	3,071	5
2002년(8세이하)	2,871	2,862	9
2003년(8세이하)	3,206	3,201	5
2004년(8세이하)	4,064	4,063	1
2005년(8세이하)	2,695	2,695	0
2006년(14세미만)	7,064	7,058	6
2007년(14세미만)	8,602	8,600	2
2008.8 (14세미만)	6,517	6,475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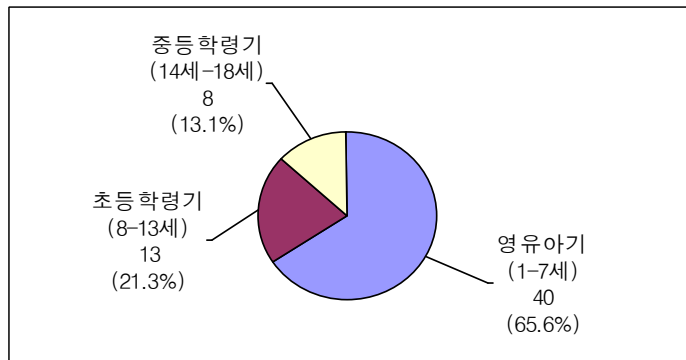
(자료 : 어린이재단 통계자료 재구성 , 2008년 8월)

11) 2005. 12. 1부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정상 실종아동의 기준연령이 ‘14세미만’으로 변경되어 2006년 정상아동 통계는 8세에서 14세로 상향조정되었다.

2005년 12월 1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시행으로 실종아동(미아)의 연령이 기존 8세 이하에서 14세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2006년에 발생한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건수는 정상아동(14세미만)이 7,064명으로 전년도 2,695명과 대비하여 262% 폭등하는 등 실종아동 등에 관련된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종아동의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실종아동 발생시 보호자 인계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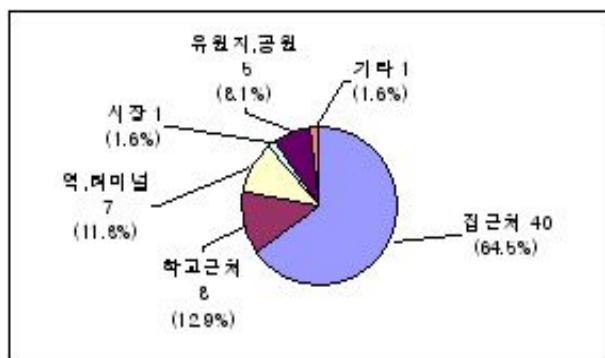
한국 복지재단의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실종아동 발생당시 연령이 영·유아기인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림 4-1〉 실종아동 발생당시 연령



무응답 : 1명(1.6%)

〈그림 4-2〉 아동이 실종된 장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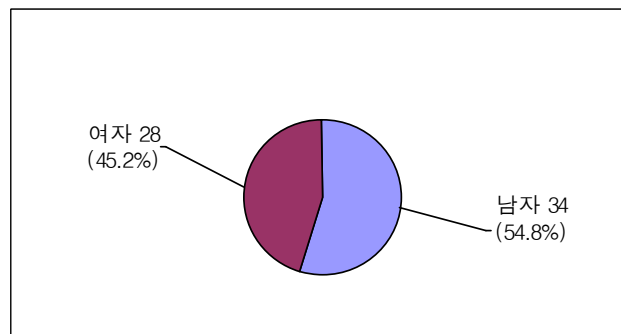
아동의 실종된 장소의 비율도 집근처가 64%로 가장높게 나타나고 학교근처가 12%, 역·터미널이 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종아동의 경우 집근처에서 보호자의 부주의나 아동의 실수로 실종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아동실종 시 가장 필요했던 서비스의 비율

	빈도	변수값비율	사례값비율
경찰의 초동수사	32	31,4	52,5
센터의 상담서비스	12	11,8	19,7
미아찾기, 사설관리 일원화	18	17,6	29,5
방송을 통한 대국민홍보	27	26,5	44,3
미웃의 관심과 도움	9	8,8	14,8
경제적인 지원	2	2,0	3,3
미아찾기 법안	2	2,0	3,3
합계	102	100,0	167,2

아동 실종시 가장 필요했던 서비스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센터의 상담서비스, 방송 등을 통한 대국민홍보 등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었고, 법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지원도 아동실종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성별에 따른 실종아동의 비율



성별에 따른 실종아동의 비율은 남자의 비율이 54.8% 여자의 비율45.2%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실종아동에 있어서 성별은 다른 주변여건이나 상황에 비하여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표 4-3〉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실종 장애아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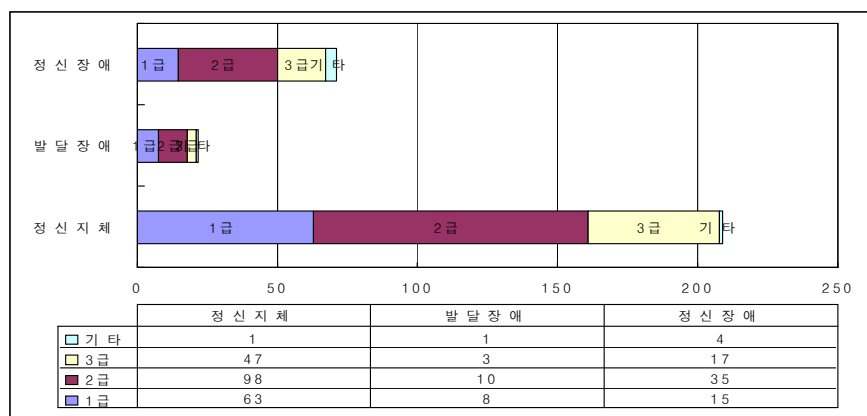
	빈도	비율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임	122	36.1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관공서나 복지기관의 지원을 받음	18	5.3
어렵지만 도움 받는 곳 없음	105	31.1
잘사는 편도 못사는 편도 아님	82	24.3
잘 사는 편임	4	1.2
기타	7	2.1
합 계	338	100.0

무응답: 13명(3.7%)

(자료 :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개관1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2006.12.1)

한국복지재단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실종 장애아동의 비율이 어려운 경제적수준을 가진 가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시에 개인적인 노력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점에서 국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세심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4-4〉 장애 유형에 따른 실종아동 분포



(자료 :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개관1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2006.12.1)

장애유형에 따른 실종아동 비율을 살펴보면,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실종아동 발생에 따른 문제

아동의 실종은 아동본인과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로 인해 사회적 손실까지 가져다주게 된다.

가. 신체적·정신적 문제

실종당한 아동은 그 유형에 따라 신체적으로는 부상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할 아동이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 분노, 불안감등 정서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며 정서발달에 민감한 시기인 아동기에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당시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서상의 문제를 갖는 것은 그 보호자도 마찬가지이다. 당사자 가족들은 아동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 근심, 걱정 등으로 정서적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실수로 실종되었다고 하는 죄의식, 죄책감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실종된 아동에게만 매달리거나, 심한 자책을 하게 되어 결국 신체적인 문제까지 유발하게 된다.

나. 경제적 문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시 그 가정은 아동을 찾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한국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의 경제상황은 매우 악화된 경우가 29.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비슷하거나 조금 좋아진 경우가 그 다음으로 각각 22.6%로 나타났으며, 조금 악화된 경우는 14.5%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미아발생 이후 미아가정의 경제생활상태는 비교적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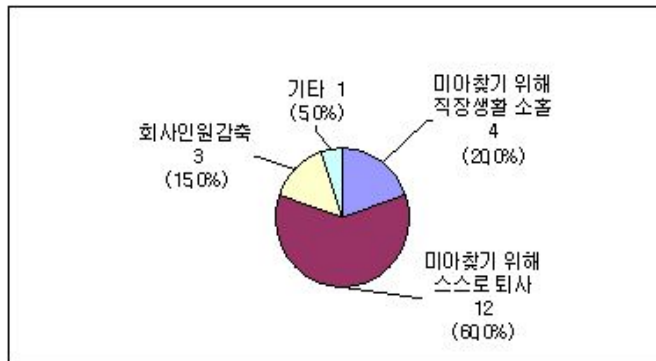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아동을 찾는데 쓰이는 아동사진 전단지 제작비, 사설기관에 의뢰한 의뢰비, 실종아동제보 확인 등을 위한 교통비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며 이런 직접적인 소비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아동을 찾는데 몰두하여 직장에 소홀하게 되거나 의욕을 상실하여 실직을 당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쓰인 비용으로는 실종아동제보 확인 등을 위한 교통비용이 55.9%, 실종아동전단지 등 홍보인쇄물 인쇄비용이 52.5%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¹²⁾ 실직의 원인으로서는 아동을 찾기 위해 스스로 퇴사한 비중이 제일 높았다.

〈표 4-5〉 유형에 따른 아동찾기에 소요된 비용

	빈도	변수값비율	사례값비율
미아전단지 등 홍보인쇄물 인쇄비용	31	41,9	52,5
미아제보 확인 등을 위한 교통비용	33	44,6	55,9
사람찾는 사설기관에 의뢰한 의뢰비용	8	10,8	13,6
기타	2	2,7	3,4
합계	74	100,0	125,4

무응답 : 3명(4,8%)

〈그림 4-4〉 실종아동 가족의 실직의 원인



무응답 : 3명(13.0%)

12) 중복응답이 가능한 설문조사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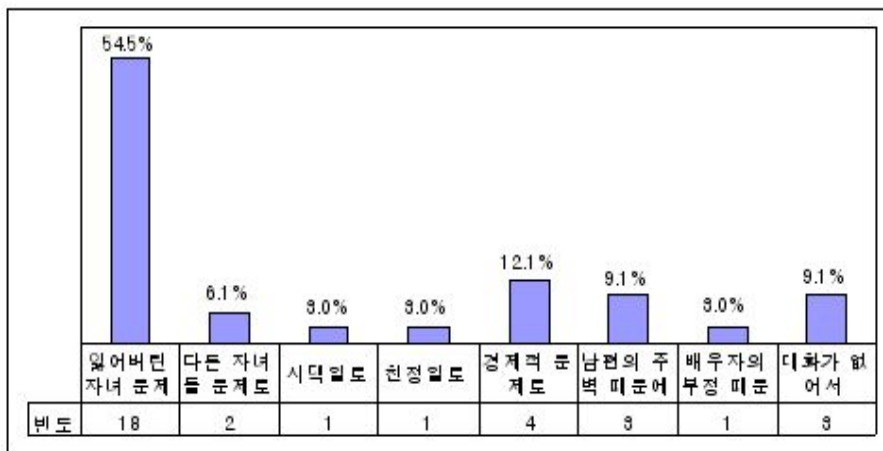
실종아동 찾기에 있어서 현재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 실제로 실종아동의 부모들은 정부에서의 지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진단지나 홍보인쇄물 등 기타 제반비용을 개인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종아동 가정의 경제적 손실은 곧 사회적 손실로도 연관된다. 만일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동에게 별도의 보호 양육에 관한 경비가 들며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가정이 늘어날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점차 늘어나게 된다.

다. 가족관계의 문제

아동의 실종은 여러 가지 정신적, 경제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는 약화되어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아동이 실종되고 나서 부부관계의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종 전과 후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바뀌고 부부싸움도 잦아졌으며, 부부싸움의 원인의 대부분은 실종된 아동의 문제였다.

〈그림 4-5〉 실종아동 부부의 싸움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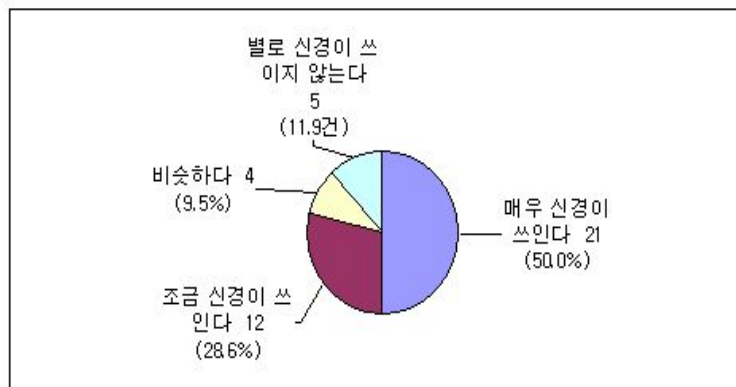


〈표 4-6〉 아동실종 후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의 변화

	실종 이전 결혼생활 만족도		실종 이후 결혼생활 만족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만족함	9	14.5%	0	0%
만족함	24	38.7%	4	6.5%
그저 그렇다	22	35.5%	46	74.2%
불만족함	3	4.8%	6	9.7%
매우 불만족함	2	3.2%	4	6.5%
무응답	2	3.2%	2	3.2%
합계	62	100.0%	62	100.0%

이렇게 가족 내에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곧 다른 가족구성원의 불안정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실종아동이외에 다른 자녀를 둔 부모는 나머지 자녀들의 미아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 지고 자녀의 외출여부 등에 대해 압박을 가하게 된다. 또한 반대로, 아동실종 초기에는 실종된 자녀에게만 급급하여 남은 자녀에게는 관심을 전혀 쏟지 못하게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다른 자녀들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어 이는 다시 우울, 불안, 신체증상, 흥미상실, 행동문제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림 4-6〉 아동실종 경험에 따른 자녀등하교시 부모의 스트레스 정도



무응답 : 12명(22.2%)

이러한 가족 간의 문제는 가정의 약화를 초래하여 이혼, 가출 및 여러 사회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결국, 가정문제의 발생은 사회적 손실이며 또 다른 문제의 악순환이 되므로 실종아동을 비단 가정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2절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 분석

1. 경찰청

2004년 5월 경찰청에 실종아동찾기센터를 설립, 전국에서 발생하는 아동 실종신고 접수·전파 및 상담·지원을 전담하고¹³⁾있고, 「장기실종아동추적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국 14개 지방청에 설치된 「장기실종아동추적전담반」은 경찰관이 실종아동 발생에서 발견까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2004년 4월부터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무연고 아동 및 아동을 찾는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상호 대조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유전자 활용 실종아동찾기 사업」을 기존의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가족들의 요청 및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경찰청에서 주관, 운영¹⁴⁾하고 있다(경찰청, 2005).

가. 신고접수 및 전산수배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미야발생 신고를 24시간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가 되면 현재 미야로 접수된 아동이 있는지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을 한다. 이때 전국 어디선가, 동일한 아동이 미야로 신고 되어 있었다면 검색되게 된다. 그러나 신고된 미야가 없어서 전산망 검색을 통하여 찾지 못하였다면, 전산망에 아동에 대한 자료가 입력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대체로 이렇게 신고 접수된 미야는 95% 이상이 24시간 내에 귀가하고 있다고 한다.

13) '04년 이전까지는 서울청에 설치된 미야찾기센터 운영

14) 인권 침해 등 방지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실종아동 유전자은행” 설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05년 12월 실종아동법 시행으로 법률로 규정됨

나. 탐문·수색

각 경찰서에서는 실종아동신고를 통보 받으면 즉시 관내 지구대(파출소)로 알린다. 각 지역의 순찰지구대의 형사 등은 현장분석, 관계인 면담, 피해자분석을 한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분석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나 사고의 위험성, 집안의 정돈상태 등을 포함하여 마지막 목격시점의 주변상황을 분석한다. 또한 의복·소지품·동행자여부·차량번호·색깔·주변 배회자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을 취합한다.

2) 관계인 면담 (보호자·친구·교사 등)

개별 면담을 통하여 관계인 상호 간에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은 없는 지 확인하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경제문제, 부부관계, 종교문제, 정신병력 등과 같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생활 태도를 파악한다.

3) 피해자 분석

평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습관, 취미, 관심사, 좋아하는 활동, 학교성적, 일상적인 생활패턴, 주된 행동반경을 조사하고, 지적능력 및 가출전력(과거 가출시 가출동기는 무엇이었는지, 가출동안에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귀가동기는 무엇인지 파악)을 파악하며, 최근 보인 언동(자살, 가출, 임신 등 언행의 징후), 행동 변화, 스트레스 요인 등을 분석하고, 일기, 수첩, 글, 사물함, 전화통화내역, 이메일 등을 통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탐문·수색하여 조사한 후 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합동심의위원회

24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실종아동사건에 대해서 탐문결과보고서를 받아서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합동심의위원회에서는 탐문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이 사례가 단순미아 사례인지 범죄혐의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단순미아 사건인 경우에는 장기미아 추적전담반에 의뢰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라. 장기실종아동추적

24시간 이내에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단순미아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전담기관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전사수배를 하게 되며, 전단을 배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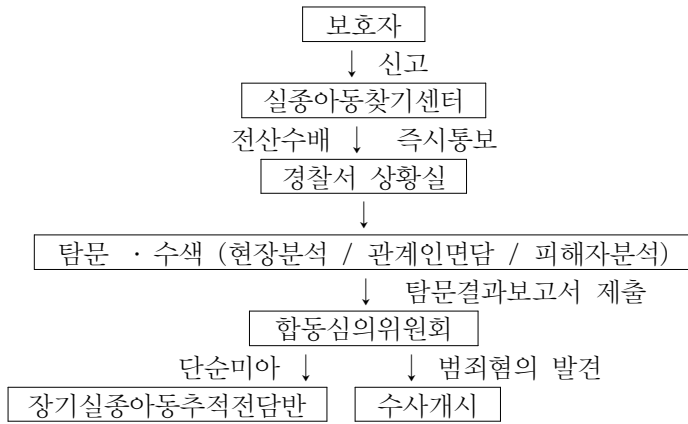
마. 수사개시

24시간 이내에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미아사건이 아니라 유괴 등의 범죄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실제로 정식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체계로는 24시간이 소요됨을 이해해야 한다.

바. DNA 유전자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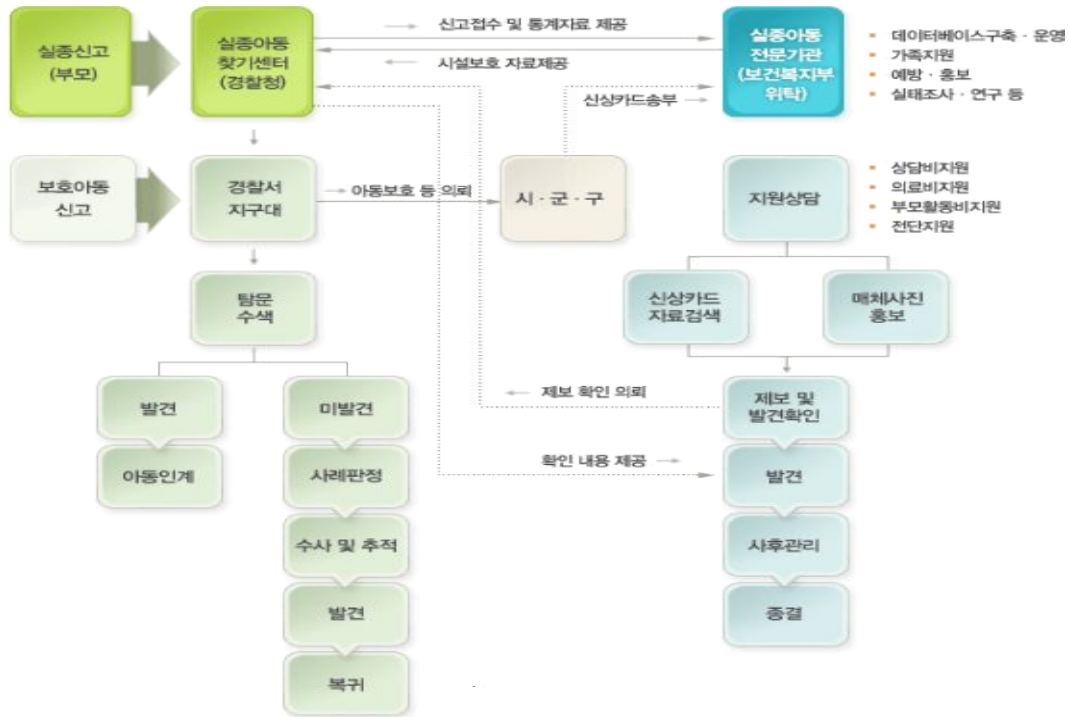
부모를 찾고자 하는 자녀들이나, 자녀를 찾기 위한 부모들이 10개 정도의 모근이 포함된 모발이나 체모 등을 통해 DNA를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가족을 찾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모를 찾는 자녀와 자녀를 찾는 부모에 관한 유전정보 분석 결과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며, 2개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특허를 받은 DNA를 통한 부모찾기프로그램을 통하여 검색하면 99.% 이상의 정확도로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해 주는 첨단 과학 기술이다. 특히 서로에 대한 인적 정보가 없거나(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어 버려서 새로운 이름을 가진 경우,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 등), 사진 등 과거의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림 4-7〉 경찰의 실종아동 찾기 처리과정



2. 실종아동전문기관

〈그림 4-8〉 실종아동 찾기 처리과정



3. 사회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등을 살펴보면 실제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모든 아동이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되는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이 보고되어 보호자가 언제라도 찾을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아동이 입소하게 되면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인적정보가 기록된 신상카드가 송부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아동의 외모나 시설종사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확신을 가지고 버려졌다고 판단하고 신상카드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신상카드 송부 업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미신고시설이나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나 정신지체장애인을 임의로 유기아라고 판단하고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철저한 행정지침으로 해결할 것인지, 입법 제정으로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요보호아동이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정신장애인의 경우, 이들의 안전한 보호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누가 어디서 미아로 발견되었고,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추적되지 못한 채, 기록조차 없이 임의로 개인이나 시설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적될 수 있는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새롭게 입소하는 아동에 대한 태도이다. 실종 아동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동에게 부모와 격리되는 것은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이다. 전문가적인 위기상담이나 아동상담이 제공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처음으로 낯선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에게 최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초기 공포와 불안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평상시라면 충분히 자신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말할 수 있는 아동도 갑자기 부모를 잃게 된 상황에서는 며칠 동안, 혹은 영영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할 수가 있다. 실제로 며칠이나 걸려서 자녀를 찾은 이후에 왜 자신의 자녀가 이름을 즉시 말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부모들이 간혹 있었다. 또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이름을 떨

면서 말했는데, 시설 종사자가 잘못 알아듣고 입소서류에 잘못 기재하게 되었고, 아동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혼날까봐 그냥 이름이 바뀐 채로 수년 동안을 시설에서 생활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다가 이 생각에 확신을 갖고 부모 찾는 일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는 DNA 유전자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부모를 찾게 되어 확인되었으며, 시설 종사자들의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지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다.

아동양육시설과 관련해서 자주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시설의 개방에 관한 것이다. 실종아동의 부모들은 초기에 전산검색이나 전단수배 등으로 자녀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전국으로 자녀가 보호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하곤 한다. 이 경우에 시설에서는 실종 아동의 부모들이 자녀를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의 아동들을 보내주어야 할지, 시설 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자녀를 찾는 부모들이 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시설 아동들을 보여주는 것은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게 자신들의 부모들은 찾아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원망의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입소된 아동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서류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조차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실종 아동의 부모를 가장하여 아동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인한 후에 아동을 유괴할 가능성도 있는 등, 다양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시설종사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실종 부모들에게 시설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불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오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 미신고시설의 경우에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도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종아동전담기관의 전문가가 이 일을 대행하거나 경찰에 의해서 실종아동의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시설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모든 시설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시설

장애인시설도 신상카드를 송부하도록 행정지침이 변경되었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

아동의 실종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실종아동찾기 캠페인 결과 장애인시설에서 발견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 시설에서의 신상카드 송부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유기되는 경험이 많아서 몇몇 사례에서 실제로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데 시설의 서류에는 유기로 분류되어 있었다. 대부분이 유기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나 집을 잃은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몇몇 장기 실종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시설을 방문하면서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시설들의 경우에 정부 보조금을 시설입소자수에 기초해서 받기 때문에 부모를 적극적으로 찾아주기보다는 입소정원을 채우고자 한다는 오해가 아직도 있으며, 특히 장애아동을 인계해주는 경우에 사례금을 주고받는다든 말도 공공연하게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시설의 종사자들은 실종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부모들의 심리적 고통을 공감하고 보다 지지적으로 이들을 대하고 적극 지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5.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실종아동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의 관심과 도움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지역에서 아동이 실종되는 경우에 단기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밀도 있는 수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즉각적인 수색을 통해서 조속한 사건의 해결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고나 사망을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실종아동전담기관의 전문가에 의해서 지역을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수립되면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면 현재보다는 미해결 사건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 실종아동의 부모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적으로 자녀의 전단지들을 홀로 배포하곤 한다. 필요한 경우에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들 부모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아동실종의 경우에는 예방이 중요하다. 이미 실종을 경험하면 부모에게나 아동에게나 그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발달단계 별로

고안된 적절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전에 준비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적절한 시점에 캠페인 등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것도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행되기를 기대하는 활동이다.

실종 상황이 장기화되면 실종아동의 부모들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실종아동을 찾아다니느라 생업을 포기하게 되거나, 또는 전단지 배포 등에도 소모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정이 많다. 또한 실종된 자녀들을 찾아다니느라 나머지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갈등을 경험하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실종아동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거나 동원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 시·군·구사회복지공무원

현재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는 아동이 시설에 입소되는 경우에 그 아동에 대한 신고는 시·군·구사회복지공무원의 책임으로 부과되어 있다. 실제로 지역에서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이 아동에 대한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가 갖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역할을 시·군·구사회복지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보호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배치를 할 때,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종합센터에 신상카드를 송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보호 상황이 변경이 될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져서 소재가 파악되지 못하는 요보호아동이나 장애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7. 언 론

실종아동과 관련해서 언론에 기대되는 역할은 지대하다. 실제로 전단지 10만장 보다 5분간의 전국방송이 효과적이라고 할 만큼 언론의 위력은 대단하다. 미국에서는 앰버경보(Amber Alert)라는 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아동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방송에 자막으로 흐르도록 하여 즉각적인 사회적 관심을 받게 함으로써 실종아동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TV의 정기 방송 프로그램도 구성되었고, 지역 방송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신문사에서도 정기적인 캠페인을 벌이거나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의 참여가 극히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밀리거나 제작진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실제로 언론의 도움이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실종 직후, 즉각적인 보도가 되는 것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도움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2004년 광주에서 발생한 우정선어린이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실종 직후 2-3일 동안 수차례의 목격자가 있었으나 실종 사건이 보도되지 못하여 모든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전국방송으로 보도된 바, 즉각적인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더라면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였다고 생각된다.

제3절 실종아동 관련 프로그램

1. 얼굴 전환(Age Progression) 프로그램

얼굴 전환(Age Progression)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사진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추정해서 그려내는 프로그램인데, 잃어버렸을 때 가지고 있던 사진으로 최근에 어떤 모습일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특히 오랫동안 아동은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0여년 이상 실종상태가 계속되었던 개구리소년 사건에서 활용된 바 있다. 아동은 모습이 1, 2년 사이에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필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아직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얼굴인식프로그램

얼굴인식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에 찾고자 하는 사진을 입력하면 옵션에 따라 가장 유사한 사진을 검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만약 찾고자 하는 사람의 사진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면, 몇 분 안에 찾

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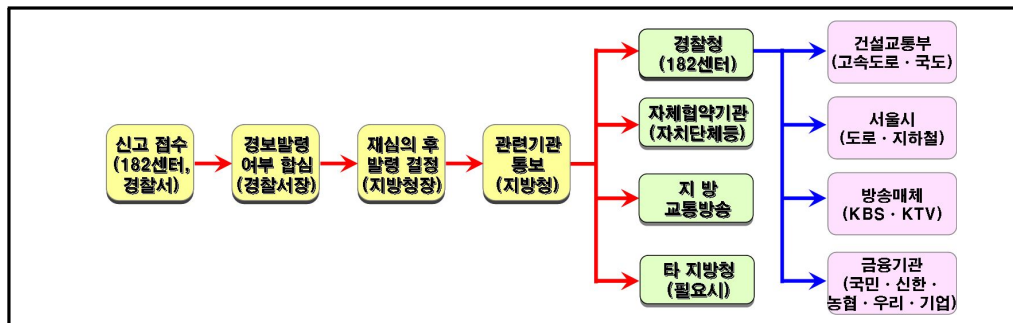
3. DNA를 활용한 혈연 검색 시스템 (유전정보은행)

DNA를 활용한 혈연 검색 시스템 (유전정보은행)은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DNA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유전적 혈연 관계를 추적하는 검색 체계로, 기존의 인적 정보를 이용하여 가족을 찾는 방법과 달리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전적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 후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4. 실종유괴아동 앰버경보시스템

현재 경찰청에서는 실종유괴아동 앰버경보시스템 발령대상을 유괴아동과 일반 실종아동 등으로 구분, 대상에 따라 경보를 「유괴경보」와 「실종경보」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괴경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의 「유괴 또는 유괴의심 실종 신고된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경보 발령 및 아동 관련 정보공개에 동의한 사건의 관할 경찰관서장이 결정, 지방청 보고 후 지방경찰청장이 재심의하는 절차로 재난경보 차원에서 단시간동안 집중 송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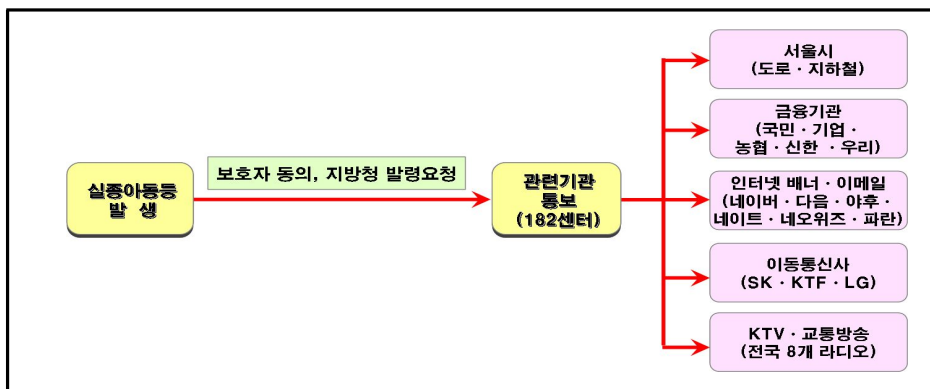
〈그림 4-9〉 유괴경보 체계도



실종경보는 실종아동법 제2조의 「만 14세 미만 아동·정신지체장애인」과 경찰청 실종아동규칙 제3조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아동 관련 정보공개에 동의시, 관할

지방청에서 182센터에 요청, 182센터에서 발령하는 절차를 거쳐 실종아동 찾기 차원에서 아동 등이 발견될 때까지 여러명을 장기간 반복 송출하고 인터넷, 휴대전화, 서울시 도로·지하철전광판, 금융기관 영업장 내 PDP 등을 이용하여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특히 실종아동등이 실종 후 1년 이상 경과시 외모가 변하는 점을 고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컴퓨터 몽타주 시스템을 활용, 실종아동의 실종당시 사진을 바탕으로 『성장 추정 얼굴』을 작성하여 실종경보 발령시 실종 당시 사진과 추정 얼굴을 동시에 송출하게 된다.

〈그림 4-10〉 실종경보 체계도



현재 서울시 도로·지하철 전광판, 5개 금융기관 PDP·대형전광판 및 KTV·교통방송은 유괴경보·실종경보 모두에 활용되고 있다.

〈표 4-7〉 서울시 소관 전광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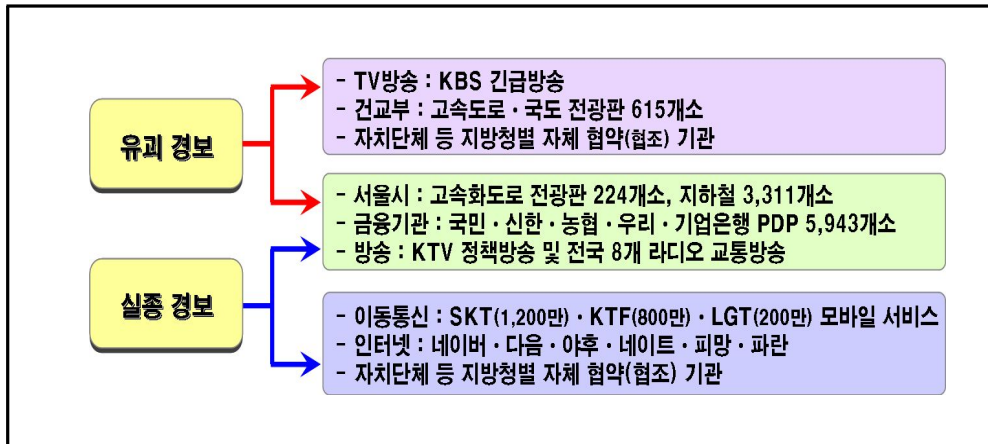
총계	고속화도로	서울 지하철(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계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3,535	224	2,589	260	164	1,069	1,096	722	246	172	230	74

서울시 소관 전광판을 살펴보면 총 3,535으로 고속화도로 224, 서울 지하철 2,589, 도시철도공사가 722 등으로 설치가 되었다. 금융기관내에도 설치함으로써 대국민 홍보에 적극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8〉 금융기관별 객장 내 PDP

계	국 민	신 한	농 협	우 리	기 업
5,943	1,023	920	2,500	900	600

〈그림 4-11〉 발령 대상별 송출기관



5. 예방사업

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실종아동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현재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막대인형극, 탈 인형극을 이용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에 방문하여 예방지침, 실종아동발생 시 대처방법, 유괴예방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일일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교육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 일반인 및 교사·부모를 위한 예방교육

실종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실종예방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

하고 또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쉽게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하며, 교사들을 위한 예방교육 매뉴얼도 제작하여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에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반인들은 예방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종아동은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에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국민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실종아동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예방교육 방법들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다. 예방 캠페인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역, 놀이공원 등에서 실종아동예방 이름표 달아주기 등 실종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매년 5월 5일에 실종아동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체와 자원봉사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한국복지재단 내 40여개 지방기관에서도 별도로 진행한다. 이 뿐 아니라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아동 찾아주기를 위한 실종아동 사진 전시회 등을 함께 하면서, 예방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행사에 봉사단체나 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미아 보호소를 겸하여 이름표 달아주기 등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캠페인은 일회성 행사로서 그 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보다 적극적인 예방 홍보를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 현행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아동 실종사건 처리의 문제점

1. 법·제도의 통일성 및 실효성 결여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을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가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의 나이를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개념과 일반적으로 혼동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의 개념은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를 만 10세미만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범위를 ‘아동보호법’상의 ‘아동’과 동일하게 18세 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범위를 19세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9세이상 24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 규정이 법제정의 취지에 따라 명칭 및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연령뿐만 아니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정비가 필요하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정신 보건 시설에도 동법이 적용되나, 상기 법은 보건 복지부 “실종아동등의 관련부”에 해당되어 있고, 정신보건시설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로 소속되어 ‘보건 정신법’이 별도관장 하고 있어 의무 사항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또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지는 인가 미인가 등의 시설에만 국한되고 정신보건 시설은 강제성이 없어 법률 해석에 따라 비협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일반시설은 실종아동법에 의하여 의무 사항 이지만 정신 보건 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상

충 된다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고 협조사항으로만 남아있는 것이다. 그 협조라는 것이 쉽지 않다. 인권이나 개인정보 등의 보호 등으로 방문확인도 힘들고 무연고 행려자들의 신상명세표 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보고의 의무조차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2. 기초 생활 수급권자 지원방식과 정보공유의 제고

현재 우리나라는 무연고 아동이나 실종으로 처리 되면 ‘기초 생활 수급권자’로 편입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준해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약간의 장애가 있거나, 서류를 바꾸거나, 입소시 행려환자로 구분하면 기초생활수급권 보호 대상자가 아닌, 현 보건법상 의료보험 급여 대상으로 편입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배에 달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상품화됨으로 인해 시설은 이유 없는 외부와의 통제를 하기도 한다. ‘보건 정신법’에 의거, 인권,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어떤 시설들은 경찰의 수색영장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고, 시설 내에 찾는 아동이 있어도 제보하지 않는 곳이 많다. 뿐만아니라, 실종아동의 정보공유 시스템 측면에서 볼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오래된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곳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현재 실종아동 담당부서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 전국 실종아동인권 찾기 협회, 경찰청이 실종아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민원실은 오래된 실종가족을 찾는 역할을하고, 여성 청소년과는 실종 신고를 받고, 최근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형사과는 합동심사 이후 수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같은 업무를 여러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경찰청 안에서도 나누어 업무를 따로 하고 있다보니, 실종자 검색에 필요한 망도 주민조회망, 인터넷망이 이중으로 사용 되어 실종신고 데이터는 경찰청에 모이고 정부 예산은 실종전문기관으로 모이게 된다. 그러하다 보니 서로 정보공유가 힘든 현실인 것이다.

3. 과도한 업무에 따른 전문성 결여

실종 아동, 실종 장애인에 관한 업무를 여성청소년과에서 거의 모두 주관하고 있고, 유기 기아, 사고 등 범죄와 관련된 일부 사건만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 이러한 경찰청(여성청소년과)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① 청소년 보호 및 아동복지법 위반사범, 비행소년 불량행위 소년의 지도단속, 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pc방 오락실 등) ② 실종아동·가출인 보호 수배 및 시스템 관리③ 소년(20세미만)범죄 수사, 여성 상담실 설치운영 여성피해자 신고 및 여성인권단체 제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미성년매매춘, 청소년성매매 등 ④ DNA (유전자 검사) 대상물 채취를 담당하고 있고, 경찰청 182는 실종신고 접수 및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 부서에서 해야 할 업무량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보니 장기 실종아동을 찾는 일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또한 실종 신고를 접수 받는 경찰청 182에서도 하루에 수십 수백건의 실종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신고를 받는 일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장기실종 아이들의 수사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가 계속된다면 실종아동과 관련된 업무는 형식적인 일반 업무에 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경찰은 지금도 납치의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단순 가출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실종아동 관련 교육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실종아동이 장기화가 될 수록 아동을 찾는 일은 어려워지게 되므로 먼저 담당 공무원의 교육이 강화가 되어 실종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시설에 관심을 갖고 아동의 신상기록도 꼼꼼히 살펴보고 부모가 찾고 있음에도 신고 되지 않아 찾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보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법률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신고의무를 하지 않는다거나 불법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 등에 교육함으로 실종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고,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종예방교육과 콘텐츠,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아동에게도

교육을 시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아동 실종사건의 효과적 처리방안

1. 법·제도의 정비 및 보완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 규정이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아동연령범위의 제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시설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로 소속되어 '보건 정신법'이 별도관장 하고 있어 의무 사항이 아니게 되므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성을 동원한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가로 실종아동의 예방과 수색, 귀가 후 원만한 적응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 실종아동에 대한 업무 처리와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 모든 보호시설의 수용자 정보 전산화와 수용자 현황 신고 의무 등이 법·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입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기초 생활 수급권자 지원방식 개선과 실종아동 담당기관의 통합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실종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수급권자로 책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미신고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제도권 밖의 시설에서 이런 점을 악용하여 수급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각종 후원을 받기위해, 낙후된 환경에서 실종아동들을 보호하면서,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지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모든 시설에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면서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 신상카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만 지원되도록 지원방식이 개선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여러개로 나뉘어져있어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실종아동 담당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고 실종아동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실종아동 전문 공무원을 뽑아서 인사이동 등으로 일이 지연되는 일을 없앨 수 있고 전문가에 의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실종 아동의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사례관리나 법령 개정등 실질적인 실종 아동들을 찾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 수급권자의 개인카드를 의무적으로 제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 대조하여 실종아동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수급대상자의 철저한 신변이 확인 조사 되어야 한다. 미인가시설등도 철저한 확인을 거쳐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실종아동 관련 전문가 양성 및 특별 수사팀 확대·강화

장기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실종 신고 접수 즉시 약취·유인인지, 사고인지, 가출인지, 유기인지, 단순히 길을 잃은 경우인지를 정확히 판정하는 것이다. 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실종아동 담당경찰관은 실종신고 접수 당시 즉각 사례판정하여 수색,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정확한 사례판정에 따라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전개 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 찾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 경찰관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별도의 실종아동 특별 수사팀을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별 수사팀을 실종아동찾기 추적 수사에 전담토록 해야 하며, 현재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배치된 실종아동 전담 경찰관도 실종아동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4.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활용

정기적인 캠페인과 더불어 각종 전광판 홍보, 온라인 홍보 등을 전개하면서 공익광고 차원에서 캠페인이 수시로 진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 및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실종아동 찾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홍보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예방교육은 인형극을 이용한 어린이집 방문 예방교육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홍보와 예방교육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활용해야만 한다. 이러한 예방교육 자료를 대량 제작하여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배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활용하여 교육하게 하고, 교육 결과를 접수받게 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아동이 실종되면 신고 접수후에 182에서 전산등록하고 해당 경찰서에 지시하여 적극적인 수색, 수사로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182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 져야만 할 것이다. 이와함께 다양한 홍보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 활용도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 활용하고 있는 매체들은 지속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이고, 신규로 실종아동의 사진을 홍보해 주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신청방법을 간소화하고, 전산화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또한 새로운 홍보방법들을 구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개발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① 이메일을 통한 실종아동을 찾아주는 실종아동 서포터즈 프로그램

- 실종아동의 사진을 이메일로 실종아동 서포터즈에게 전송하면 그 사진을 다시 지인들에게 전달해서 서로 제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② 포털사이트 활용

- 유명 포털사이트 화면에 정기적으로 실종아동을 홍보하거나 긴급 발생한 실종아동 사진을 게재하고 홍보하는 방법, 그리고 가입 회원들에게 실종아동의 사진을 발송하여 찾아주는 프로그램

③ 긴급 방송 시스템

- 미국의 Amber Alert 프로그램처럼 긴급 실종아동 사례를 공영방송에 노출하여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④ 메신저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 메신저를 사용하는 모든 유저(user)들에게 실종아동 발생 Alarm을 해 주어 찾아주는 프로그램

⑤ 위치정보 시스템을 활용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혹은 기지국 통신망을 통한 위치 정보조회로 실종아동의 위치를 파악하여 신속 정확하게 발견 귀가시키는 것

⑥ 비상 안전경보시스템 마련

- 미국의 Code Adam제도처럼 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아동이 실종되면 아동에 대한 인상착의·특징·연령 등을 안내방송하고, 신속하게 출입구를 차단하여 외부로 나가는 아동을 확인 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자체 내에서는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 부모에게 인계 하는 제도

제6장 결 론

아동 실종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위해서는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종아동의 개념과 유사개념들의 통일성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은 실종사건의 관련 법체계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실종사건과 관련된 법률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가장 주요한 법률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법은 아동복지법을 기초로 만들어졌고, 이에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 검사등에 관한 법률도 아동 실종사건을 처리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 실종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미국과 캐나다 등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예방교육도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고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실시함으로써 아동 실종사건의 해결률을 높이고 있는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발행현황을 보면 해결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발생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동 실종사건이 일어나면 실종아동과 가족들에게 크고 작은 심적·금전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장기 실종이나 범죄와 관련된 실종의 경우는 사회적파장이나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나타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살펴보면 경찰청을 중심으로 어린이재단의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호관련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우선 아동 실종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아동 실종사건이 일어났을 시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종아동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외국의 실종사건처리에 비추어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아동 실종사건처리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법·제도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이러한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수정·보완되었지만 이를 좀 더 다듬고 실효성을 높이기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 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는 기초 생활 수급권자의 지원방식의 문제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자료 공유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때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경찰청이나 관계기관의 과도한 업무와 인력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실종아동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특별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정부와 사회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종아동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의 강화와 프로그램 개발 활용이 요구된다. 아동 실종사건은 이러한 사전교육과 홍보매체의 도움이 있다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아동 실종사건이 줄어들 것이고, 만약 아동 실종사건이 발생한다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 실종사건은 그것이 범죄성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회적 손실과 피해가 다른 어떤것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건은 조금한 관심과 노력으로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한 결과를 얻기위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 강기택(2004), 미국의 미아 관련 대책과 경찰의 초동수사 요령. 경찰학연구, 제6호. 278-286. 경찰대학
- 김석산·이배근·권혁선(1988), 미아발생 원인에 관한 조사 및 미아예방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 한국어린이재단.
- 김종우(2006), 한국의 실종아동 찾기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2006년 아시아대회 아동권리와 가정위탁.
- 김형모·조정아(2003),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현황 및 구축방안. 아동권리연구. 제7권 제2호. 241-269. 한국아동권리학회
- 박은미(2001a), 효과적인 미아찾기 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미아찾기 사업을 위한 체계구축 토론회.
- _____ (2002b), 효과적인 미아찾기 사업을 위한 체계구축.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개소 15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 법제처(200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07849호).
-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2004). 미아가정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복지재단.
- 정경웅·박은숙·나현민·박정연(2005),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복지재단.
- 정익중(2006a), 실종아동 장애인의 인권과 보호. 실종아동 장애인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위한 방안 모색. 2006년 전국 시설담당 공무원 연찬회.
- _____ (2006b), 한국의 실종아동·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실종아동전문기관 개관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2001), 효과적인 미아찾기 사업을 위한 체계구축,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개소 15주년 기념보고서.
- _____ (2004), 미아가정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복지재단.

II. 국외문헌

- Bertera RL. Planning and implementing health promotion in the workplace: a

- case study of the Du Pont company experience. *Health Education Quarterly* 1990;17(3):307-327
- Bly JL, , Jones RC, Richardson JE. Impact of Worksite Health Promotion on Health Care Costs and Utilization. *JAMA* 1986;256(23):3235-3240
- Brian O, Neville O, Michael P, Michelle G. An economic evaluation of four work site based cardiovascular risk factor interventions. *Health Education Quarterly* 1995; 22(1): 9-19
- Byers T. Mullis R. Anderson J. Dusenbury L. Gorsky R. Kimber C. Krueger K. Kuester S. Mokdad A. Perry G. The costs and effects of a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 following work-site cholesterol screen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5(5):650-5, 1995
- Conrad KM, Riedel JE, Gibbs JO. Effect of worksite health promotion programs on employee absenteeism. *AAOHN Journal* 1990;38(12):573-577
- Drummond M, Torrance G, Mason J. Cost-effectiveness league tables: more harm than good?. *Soc Sci Med* 1993; 37(1): 33-40
- Ellis E, Koblin W, Irvine MJ, Legare J, Logan AG. Small, Blue Collar Work Site Hypertension Screening: A Cost-Effectiveness Study.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94; 36(3) : 346-355
- Erfurt JC, Foote A. Cost-Effectiveness of Work-Site Blood Pressure Control Programs.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84; 26(12): 892-900
- Fielding JE, Breslow L. Health promotion programs sponsored by California employe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83;73(5):538-542
- Fielding JE, Knight K, Mason T, Klesges RC, Pelletier KR. The Effects of Workplace Health Promotion on Absenteeism and Employment Cost in Large industrial Popul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94; 36(7): 743-6
- Fielding JE, Manson T, Kinght K, Klesges R, Pelletier KR. A randomized trial of the IMPACT worksite cholesterol reduction program.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995; 11(2):120-123
- Golaszewski T, Snow D, Lynch W, Yen L, Solomita D. A benefit-to-cost

- analysis of a worksite health promotion program. JOM 34(12) 1992: 1164-1172
- Gomel M, Oldenburg B, Simpson JM, Owen N. Work-site cardiovascular risk reduction: a randomized trial of health risk assessment, education, counseling, and incentiv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93;83(9):1231-1238
- Harris JS. Cost effectiveness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JOEM 1991; 33(3): 327-330
- Klarman HE. The road to cost-effectiveness analysis.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Health and Societies 1982;60(4):585-603
- Ruchlin HS, Melcher LA, Alderman MH. A Comparative Economic Analysis of Work-Related Hypertension Care Programs.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84; 26(1): 45-49
- Weinstein MC, Stason WB. Foundation of cost-effectiveness analysis for health and medical practices. New Engl J Med 1977; 296(13):716-21

Ⅲ. 기타자료 (인터넷 자료)

- www.missingkids.com/html/news_dedication.html.
- www.ourmissingchildren.ca/en/publications/police.html.
- www.childfocus.org/1/genhtml/success.html.
- <http://www.182.go.kr/index.jsp>
- http://minihp.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37019683
- <http://www.missingchild.kr/10>
-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10
- <http://82come.co.kr/come/>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4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2.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아동등을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를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라 함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모발·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라 함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라 함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아동복지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조정한다.〈개정 2008.2.2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고 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06.2.21〉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3.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 · 감독하는 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등을 관계법률에 따라 보호조치하는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고,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 ③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개정 2008.3.21〉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신설 2008.3.21〉〈중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8.3.21〉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3.21〉〈제4항에서 이동 2008.3.21〉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개정 2006.2.21〉

제8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제6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2.21>

② 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0조(출입·조사 등)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8.3.21><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8.3.2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08.3.21>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과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②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는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②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유전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한 때
2.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구하는 때
3. 유전자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때

③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절차 및 방법, 검사대상물의 폐기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4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에 관한 신청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조속한 복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제17조(벌칙)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적 외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사용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

제19조(과태료)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06.2.2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6.2.21>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6.2.21>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7560호, 2005.5.31〉

-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하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에 관하여 제출한 신상카드는 제6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③(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관리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 2006.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 제9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내지 제5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2>까지 생략

<47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7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44호, 2008.3.2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논문초록(국문요약)

실종이란 종적을 잃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아동 및 가족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헤어짐이 되므로 그 자체로도 엄청난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고 광범위 해진다.

현재 법률상 '실종아동등'이라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단순미아)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실종의 개념을 단순히 잃어버려진 아동을 의미하는것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가족으로부터의 이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단순실종과 유기, 가출, 유기아 등을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발견한 이후에야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원인이 실종아동찾기 체계의 문제인지, 경찰의 수사력에 관한 문제인지, 부모의 책임 유기에 관한 문제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종아동 중 범죄에 기인한 경우, 즉 약취·유기·유괴의 목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자발적 사유 혹은 사고로인한 이탈이 추후에 약취·유기·유괴의 단계로 진행된 경우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종아동의 개념과 유사개념들의 통일성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은 실종사건의 관련 법적체계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실종사건과 관련된 법률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가장 주요한 법률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법은 아동복지법을 기초로 만들어졌고, 이에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등에 관한 법률도 아동 실종사건을 처리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발행현황을 보면 해결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동 실종사건이 일어나면 실종아동과 가족들에게 크고 작은 심적·금전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장기 실종이나 범죄와 관

련된 실종의 경우는 사회적과장이나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나타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한다.

선진외국의 실종사건처리에 비추어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아동 실종사건처리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법·제도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이러한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수정·보완되었지만 이를 좀 더 다듬고 실효성을 높이기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 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는 기초 생활 수급권자의 지원방식의 문제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자료 공유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때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경찰청이나 관계기관의 과도한 업무와 인력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실종아동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특별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정부와 사회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종아동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의 강화와 프로그램 개발 활용이 요구된다. 아동 실종사건은 이러한 사전교육과 홍보매체의 도움이 있다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아동 실종사건이 줄어들 것이고, 만약 아동 실종사건이 발생한다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보고서 2009-05

아동 실종사건의 효과적 처리 방안

2009년 10월 발행

2009년 10월 인쇄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인쇄처 : 제이케이컴퍼니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